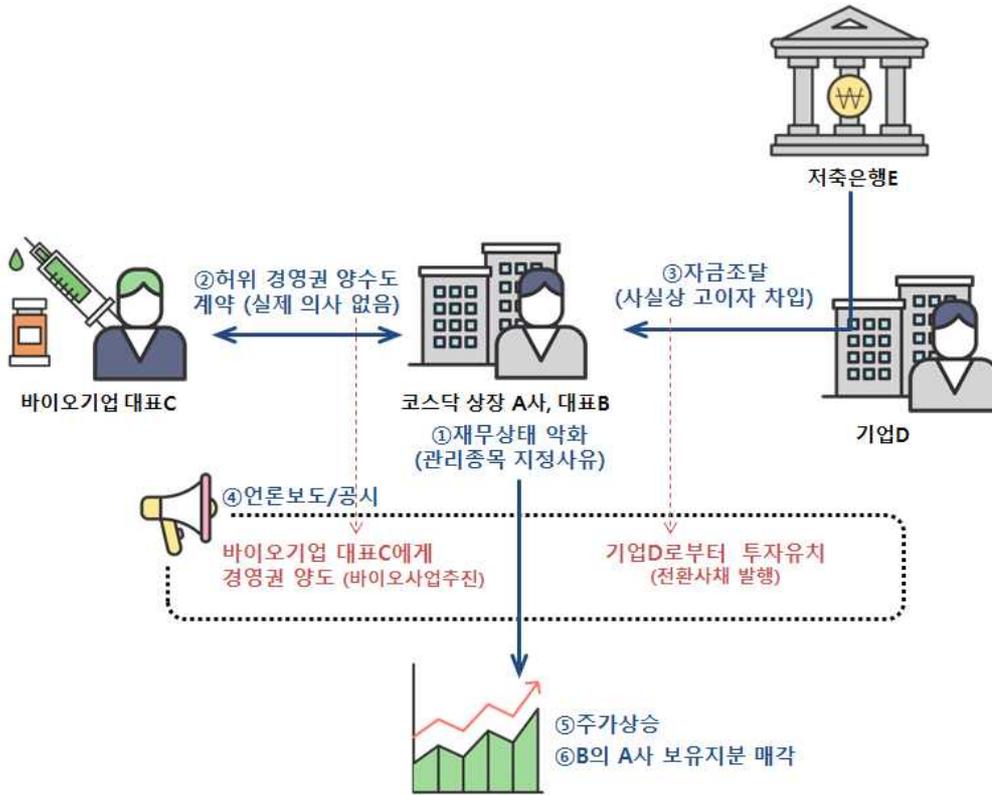


 	보 도 참 고 자 료			
		보도	'21.2.4.(목) 16:00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(02-2100-2601)	담 당 자	김민석 사무관(02-2100-2518) 이용준 사무관(02-2100-2516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박 봉 호(02-3145-5650)		김형욱 팀장(02-3145-5637) 임형조 팀장(02-3145-5636)
	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최 광 식(02-3145-5100)		조성우 팀장(02-3145-5107)
	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(02-3774-9002)		이승범 부서장 (02-3774-9020) 이국철 부서장 (02-3774-9140)

제 목 : 2020.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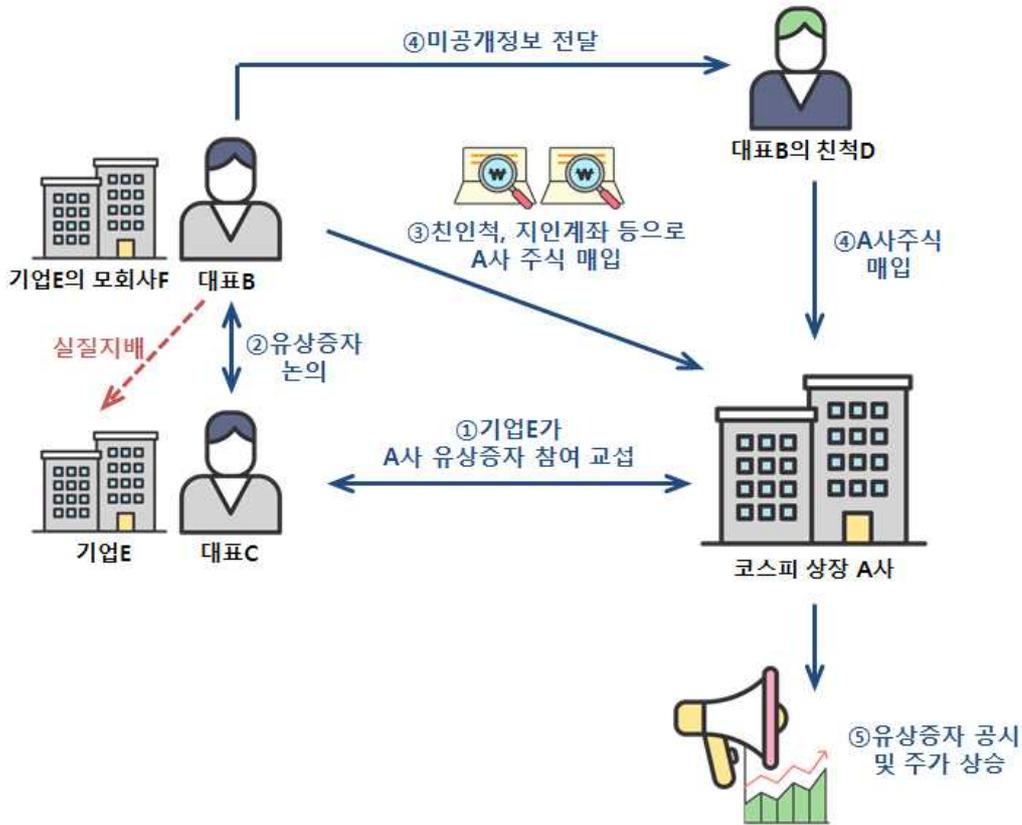
-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,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,
 - 매분기,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2020년 4분기 증선위는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,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·통보했습니다.
 - 불공정거래 유형별로(부정거래, 미공개정보이용, 시세조종)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[별첨1~3]과 같이 공표합니다.



- ① : A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
- ② : A사의 대표 B는 실제 경영권 양도·양수 의사가 없음에도 바이오기업 대표C와 허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
- ③ : 대표B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저축은행 차입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(투자자금)을 조달 (단, 외관상 기업D가 자금을 납입)
- ④ : ②와 ③의 내용을 '경영진 교체를 통한 바이오 사업 추진' '정상적인 외부투자자금 조달'인 것처럼 언론보도·공시
- ⑤, ⑥ : A사의 주가가 상승 후, B는 A사 보유지분을 매각 (이후 A사는 상장폐지)

[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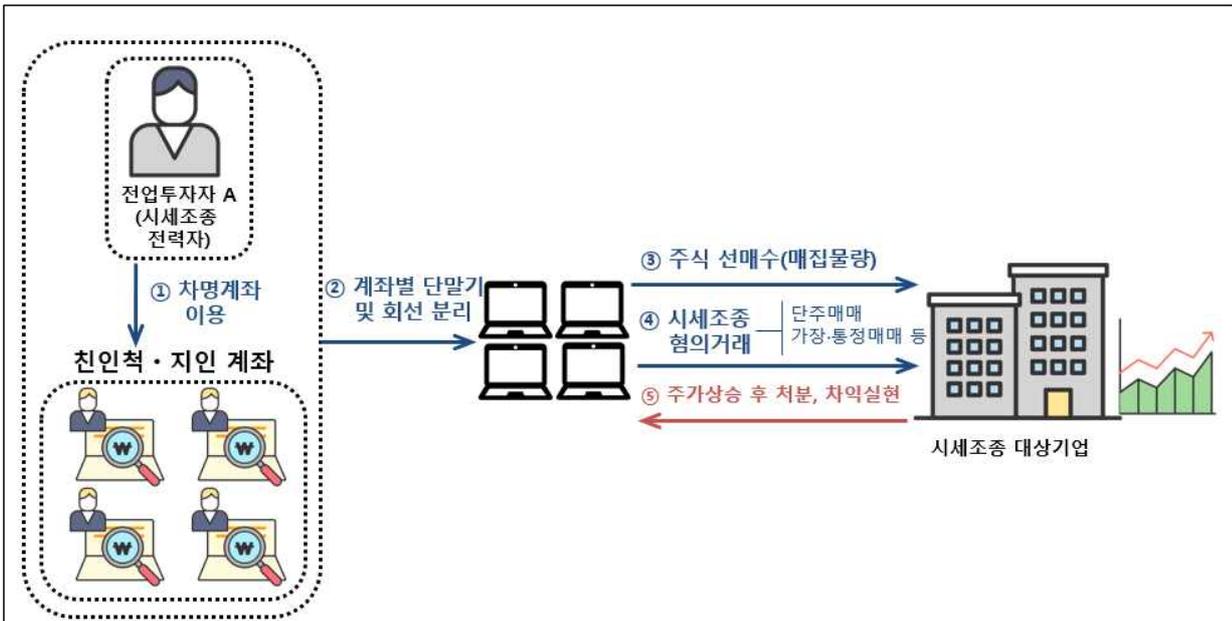
- 외부감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, 신규사업 진출 및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공시·보도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투자자분들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황, 기존 사업 업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- ①, ② : 대표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코스피 상장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(유상증자 사실)를 알게됨
- ③, ④ : B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친인척, 지인계좌 등으로 A사 주식을 매입했고 친척D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D도 A사 주식을 매입
- ⑤ : 공시 이후, A사 주가가 상승하여 B와 정보를 전달받은 D는 부당이득을 얻음

[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]

-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.
- 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(예: 전자공시 3시간 이후) 전에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됩니다.



- ① : 시세조종 전력자 A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음
- ② :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별로 단말기 (컴퓨터)와 인터넷 회선을 분리하고, 계좌출금도 ATM만을 이용
- ③ : 차명계좌로 상당량의 주식을 선매수함
- ④ : 시장가 또는 고가매수로 소량(1주~22주)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즉시 체결시키는 단주매매, 상기 계좌 간 가장·통정매매 등을 활용해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여 호가창이 지속적으로 점멸(깜빡깜빡)토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게 함
- ⑤ :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선매수(매집물량)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실현

[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]

- 소량(1주~22주 등)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빡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로 조치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.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
-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 접속
 - 전화 : 1577-0088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